

처리부서명	[redacted]
담당자명	[redacted]
전화번호	[redacted]

## 발전사업 허가증

1. 성명 (대표자): 학 [redacted] 법인등록번호 : [redacted]
2. 상호: 철성 [redacted]
3. 소재지: [redacted]
4. 사업의 내용: 태양광 발전사업  
사업장소: 고성군 [redacted]
5. 사업규모  
원동력의 종류: 태양광 설비용량: 99.82 KW  
공급전압: 380 V 주파수: 60 Hz
6. 특정공급구역: 해당없음
7. 사업준비기간: 2024년 05월 27일 ~ 2025년 11월 27일
8. 허가조건:  
-관계부서 관련법령 검토의견 준수  
-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 선행  
-사업준비기간내 사업개시 완료
9. 기타: (지목) [redacted] (설치면적)471.25㎡(설치형태)건물 위

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 사업을 허가합니다.

2024년 05월 27일

고 성 군





# 고 성 군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개발행위허가(건물 위 태양광) 알림[고성 기월-학
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, 민원접수번호 [redacted] 호와 관련됩니다.
2.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신청인: 학 [redacted]

나. 허가현황

용도 지역	위치	지목	면적(㎡)/ 발전용량(kw)			목적	사업 기간
			건축면적	태양광설치 면적	발전용량		
자연녹지 지역	[redacted]	대	2,235.864	459.79	99.82	발전사업용 전기설비 설치(건물 위 태양광, [redacted])	2024. 6. ~ 2024. 12. 31.

※ 사업지 인근 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 안내 바람

3. 관련 부서 및 고성읍에서는 위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개발행위 허가 조건 1부.

2.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1부. 끝.

## 고 성 군



수신자

[redacted]  
과장, 고성읍장

[redacted] 재무과장, 열린민원과장, 경제기업

주무관

[redacted]

개발행위담당

[redacted]

건축개발과장

[redacted]

전결 2024. 6. 7.

협조자

시행

[redacted]

접수

우 52943

[redacted]

/ www.goseong.go.kr

# PPA 고객 신청(변경) 접수증명서

접수번호		발전계약번호		
발전 사업자	고객명	학	발전소명	
	대인번호		전화번호	
	주소	지번		상업운전희망일
		도로명		2024-06-05

수전계약번호		접수내용	신설(발전기)
발전원	01 태양광	계약전력	100
공급방식	738 삼상4선(220/380V)	공급전압	380V
설치장소	경상남도 고성군		
설비용량	99.82	설비유형	3 일반선로(한전)
고객구분	03 발전사업자	적용약관(규정)	개별전력수급계약(PPA)
전력거래형태	한전거래		
사용전 점검기관	3 안전공사(자가용/전기사업용)	공급설비 공사업체	
시설부담금	1 표준시설부담금		공중(○), 지중( )
설비관리자명		연락전화	
SMS 수신번호			

**※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**

○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,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.

○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

- 한전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
-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,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
-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

※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,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.

-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
-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
-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%를 초과하였으나,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-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
○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5월 29일

경남본부 고성지사장

(인)



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.